해양오염방지법 개정

◈ 개정사유

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(IMO)에서 채택한 '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' 이 2005년 5월 19일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

◈ 공포일

2005년 12월 29일(법률 제7787호)

◈ 주요내용

○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의무화 【제23조의3 신설】

–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함.

○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 금지 【제23조의4 신설】

– 선박으로부터의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,
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는 것도 금지함.

○ 질소산화물의 배출 규제 【제23조의5 신설】

– 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.

○ 선박용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 【제23조의6 및 제23조의7 신설】

–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용 연료유는 공급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.

○ 선박안에서의 소각 제한 【제23조의8 신설】

–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종류는 소각을 금지하고 그 밖의 물질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각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 선박안에서의 소각을 제한함.